

○ 변경 방침 전·후 비교

- 심의대상 축소 : (기존) 건축허가 및 신고 → (변경) 건축허가

행위구분	(변경전) 현행 행위완화 범위	(변경후) 행위완화 변경 범위
신 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층이하, 용적률 240%이하, 건폐율90%이하</li> <li>- 지하층 허용</li> <li>- <sup>주</sup>공익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인 경우 아래 적용</li> <li>· 6층 이하, 용적률 360%이하, 건폐율60%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폐율 90% 및 용적률 240%이하</li> <li>- 지하층 및 지상4층 이하</li> <li>- <sup>주</sup>공익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인 경우 아래 적용</li> <li>· 6층 이하, 용적률 360%이하, 건폐율60%이하</li> <li><b>[※단, 신고 대상은 심의대상 제외]</b></li> </ul>
중 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층이하, 용적률 240%이하, 건폐율90%이하</li> <li>- 건물상호간 연결통로</li> <li>- 위생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화장실, 조리장</li> <li>- 에스컬레이터,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</li> <li>- <sup>주</sup>공익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인 경우 아래 적용</li> <li>· 6층이하, 용적률 360%이하, 건폐율60%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폐율 90%, 용적률 240% 및 지상4층 이하</li> <li>- <sup>주</sup>공익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인 경우 아래 적용</li> <li>· 6층 이하, 용적률 360%이하, 건폐율60%이하</li> <li><b>[※단, 신고 대상은 심의대상 제외]</b></li> <li>- 아래의 경우 상기 규모 이상이라도 심의로 허용</li> <li>· 건물상호간 연결통로</li> <li>· 위생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화장실, 조리장</li> <li>· 에스컬레이터,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</li> </ul>
리모델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 용</li> <li>· 15년 경과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/10 범위내 증축 허용 등 건축법 제5조(적용의 완화)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 용</li> <li>· 15년 경과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/10 범위내 증축 허용 등 건축법 제5조(적용의 완화) 적용</li> <li><b>[※단, 신고 대상은 심의대상 제외]</b></li> </ul>
개축·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전 규모 범위안에서 허용</li> <li>· 단, 전면철거 개축의 경우 신축과 같은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 용</li> <li><b>[※단 신고 대상은 심의대상 제외]</b></li> </ul>
용도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 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 용</li> <li><b>[※ 심의대상 제외]</b></li> </ul>
대수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 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 용</li> <li><b>[※ 심의대상 제외]</b></li> </ul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</li> <li>- 조립식 주차시설 신축, 증축 허용</li> <li>· 주차용 공작물, 주차용 건축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</li> <li>- 주차용 공작물 축조신고 신축, 증축 허용</li> <li>· 단,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만 가능</li> <li><b>[※ 심의대상 제외]</b></li> </ul>

주) 공익성을 위한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직접 건축하는 경우를 말함

- 기타 : 행위허가 시 건축주의 공증각서를 제출받아 정비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

(각서 내용)

-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 자진철거 등 적극 협조
-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증각서 정보공개 요청시 제공에 동의
- 건축물 매매 시 위 내용 승계 할 것

※이전과 동일함